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도시건설위원회(건설교통국)

의안번호	165호
제 출 자	박영섭 의원 외 4명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이선하

1. 제안이유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기존 여성 우선 주차장인 '여행 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여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혜택기준이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신설(안 제6조)
- 제6조 신설에 따른 장 번호 및 조 번호 수정(안 제7조~제14조)
- 제6조 신설에 따른 서식 별지 수정(별표 제9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100분의 50할인(별표 1)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주차장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입법예고(2023. 8. 21. ~ 2023. 8. 26.)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가. 개요

- 본 조례 개정(안)은 이용대상을 여성으로 국한하던 “여행주차장”의 명칭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는 한편,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과 이들을 포함하여 영유아를 동반하는 사람도 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안 제6조)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이 두 자녀는 30%, 세 자녀는 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것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모두에게 50% 할인을 적용하여 다자녀 혜택 기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별표 1)

나. 검토의견

1)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관련 검토(안 제6조)

- 현행 「주차장법」 제6조제2항¹⁾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또는 자치구는 해당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성북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 제21조의2²⁾에서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이상을 여성이 우선

1)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의2(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여행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시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 감시가 쉽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 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여행주차장”이라 한다)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 “여행주차장”은 여성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도입·운영되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여행주차장”의 이용대상을 여성한정에서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까지 확대하여 그 명칭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경우 2023.7.18.일자로 조례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
 - 또한, 2023년 3월 언론보도³⁾에 따르면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약 53.6%가 ‘여성 및 교통약자 모두를 배려하는 주차장으로 개편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 함
 - 저출산 및 빠른 고령화 속도에 대비하여 여성만이 아닌 다양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이해된다 할 것임. 다만, 현행 여행주차장과 마찬가지로 ‘가족배려주차장’도 법적 제재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별도의 행정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2) 2자녀 가구 주차장 요금 30%감면에서 50%감면 검토(별표 1)

- ‘20년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⁴⁾은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였으며, ‘22년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출산율⁵⁾이 더욱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3) 문화뉴스(2023.3.13.) : 명칭 바뀌는 여성우선주차장 제각기 다른 인식“성차별 조장”이라는 인식도..

< 리얼서치코리아 설문조사 결과 >

- 응답자수 : 4,352명(96% 신뢰수준, 허용오차±1.4%)

- 조사기간 : 2023.2.22.~2.26 - 조사방법 : 앱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

4) 합계출산율 :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개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5) KOSIS(국가통계포털) 인구동향조사 2022년도 합계출산율 : 0.78명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3.3.28.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 후속조치로 다자녀 혜택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함
- 서울시의 경우 2023.3.27.일자 조례개정⁶⁾하여 두 자녀 가구부터 다자녀 혜택을 적용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있음
- 현행 조례에서는 다자녀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다둥이 행복카드’⁷⁾ 소지자에 한하여, 두 자녀(30%), 세 자녀(50%)로 할인율을 차등적용하고 있어, 최대 감면(50%)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로 한정시키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두 자녀 이상인 경우 발급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모두에게 최대 감면 요율인 50%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본 조례 제15조제2항 중 준용 근거조항인 “제11조제2항”은 개정조례안에 따라 “제12조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6) 「서울특별시 주차장 관리 조례」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한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2023.3.27.)

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7) “다둥이 행복카드”발급대상:만 19세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거주하는 2자녀이상 가정 중 막내가 18세이하인 가정